

판례 및 심사결정례

지방세관련 대법원 판례

1. 2002두6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광역시 ○○구 ○○ 8동 1257-5

대표자 담임목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상고인】 ○○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전○○, 김△△,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누41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익사업인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였다.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6개의 점포 중 5개의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1개의 점포부분에 대하여도 타에 2년간 새로이 임대한 점, 그리하여 기존 임대

차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난 후에야 이들 점포를 모두 명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01두10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장학회
○○광역시 ○○구 ○○동 47-3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고, 피상고인】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진○○, 이○○,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누69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규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1208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29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달리 이를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